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1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1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Ae클래스 수익증권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1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1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A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</u>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</p>	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</p>

<p>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</p> <p><u>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10. S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(생략)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<u>연 1000분의 3.5</u></p> <p>다.·라.(생략)</p> <p>1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S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<u>연 1000분의 2.0</u></p> <p>다.·라.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A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</p>	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</p>

<p>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1 이내</p> <p><신 설></p> <p>③~⑤ (생 략)</p>	<p>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1 이내</p> <p><u>2. Ae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5 이내</u>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
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생 략)</p> <p>⑤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</p>	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<p><u>아니한다.</u></p>	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
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6.~10.(생략)</p> <p>②~⑩(생략)</p>	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</u>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6.~10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⑩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